

2005. 6. 20(월) 09:30  
2005년도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1.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6. 8
- 다. 의안번호 : 제2005 - 32호
- 라. 상정일자 : 2005. 6. 16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개정·시행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제 증명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별표1]의 7.부동산에 관한 사항에 (6)개별주택가격 확인 요액과 (7)공동주택가격 확인 요액을 각각 1,000원으로 하고, 공시일자별 추가분에 대하여 2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05.5.23 거창군 공고 제239호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요액을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자체원가분석 결과 1,007원정도인 것을 감안 결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성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요액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재검토 후 조정할 계획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②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6.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6. 8
- 다. 의안번호 : 제2005 - 34호
- 라. 상정일자 : 2005. 6. 16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또는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의하도록 함.(안 제2조)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조의3)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규정함(안 제8조)

-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거창군 지역사회협의체”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조례 내용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안 제7조의 위원해촉을 군수의 위촉권한이 없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까지 해촉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8조제3항의 각 협의체에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의 직원(일반 또는 일용직)을 둘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 의료보건계획은 제3기 계획(2003~2006)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거창군 사회복지계획도 2003.12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용역하여 납품된 “거창복지21 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①,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p>	<p>제2조(기능) ①,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②생략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②생략            ③ - 삭제</p>

<p>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수당 등 운영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 삭제</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③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6. 8

다. 의안번호 : 제2005 - 35호

라. 상정일자 : 2005. 6. 16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기존의 공설일반묘지를 정비사업시행으로 공원묘지로 조성된 묘지에 대하여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 사용권 소멸에 대한 일부내용을 신설과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설일반묘지중 정비사업을 시행한 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별표1)

-“거창가지”, “남상무촌”,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명칭변경

○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일반묘지를 2002~2004년까지 정비사업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4.28 거창군 공고 제195호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④ 거창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8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6. 8

다. 의안번호 : 제2005 - 36호

라. 상정일자 : 2005. 6. 16

### 2. 폐지이유

○ 동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되던 것으로 2004.10.22부터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9.11 거창군 조례 제1533호로 제정되어 운용되던 것으로 2004.10.22부터 탁노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현재 거창군내 경로식당은 12개소가 운영중이나 거창읍과 가조지역은 월~금요일까지 운영(일 102명정도, 연간 2만명)되나 기타읍면은 경로당별 연간 16천여명 지원계획으로 55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